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65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태선 · 허종식 · 이학영  
한준호 · 어기구 · 민병덕  
한민수 · 김주영 · 박 정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또는”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5조의1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 부 칙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④ (생략)</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p>	<p>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u>-----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 ----- ----- ----- ----- ----- -----.</p>

<p>1.·2. (생략) <u>&lt;신설&gt;</u></p> <p>3. (생략) ② · ③ (생략)</p>	<p>1.·2. (현행과 같음) 2의2.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제2조제8호에 따른 <u>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u></p> <p>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